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5판) 개정전후대비표

〈지침관리팀〉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I. 개요		
1	<p>1. 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 ○ 본 지침은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한 「감염병예방법」법령의 규정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므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 소독관련 세부사항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항을 준수 	<p>1. 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제1호가목)에 따라 ‘제2급감염병’에 해당 ○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는 오염된 장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점검 시행 	<p>(지침관리팀)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문구 수정</p>
	<p>2. 목적 및 적용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소독의 개념과 효과, 환경 소독제 종류와 유의사항,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19 정보를 토대로 제시하는 올바른 소독방법, 대체 소독방법관련 정보 등 기타 소독관련 중요 정보 제공 ○ 적용 범위 <p>-----</p> <p>-----</p> <p>-----</p>	<p>2. 목적 및 적용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전파 차단 <p>(삭제)</p>	<p>(지침관리팀) 문구수정</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신설)</p> <p>○ 적용 상황</p> <p>- (환자 이용 장소 방역) 환자가 이용한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가정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p> <p>*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p> <p>*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p> <p>- (일상적 예방)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카정 등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p> <p>※ 의료기관의 소독 기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준수(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홈페이지-관련기관별 대응지침 참조)</p>	<p>○ (주요 내용) 소독의 개념과 효과, 소독 시 주의사항, 올바른 소독방법 등 소독관련 중요 정보 제공</p> <p>○ 적용 상황</p> <p>① (환자 이용 장소 방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용한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p> <p>▶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p> <p>▶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p> <p>② (일상적 예방)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주택 등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p> <p>▶ 의료기관의 소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참고(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관련기관별 대응지침 참조)</p> <p>▶ 일상적 예방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 [붙임 5] 일상 소독 방법(예시) 참조</p>	
3	<p>3. 개념 정의</p> <p>○ (청소(세척, Cleaning¹⁾) -----</p> <p>(신설)</p>	<p>3. 개념 정의</p> <p>○ (청소(세척, Cleaning)▶) -----</p>	<p>(지침관리팀) 문구수정</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소독(Disinfection²⁾) ----- (신설)</p> <p>○ (청소 및 소독의 효과) ----- (신설)</p> <p>【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전파경로 및 감염력 유지-기간³⁾</p> <p>① (전파경로)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묻은 물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음</p> <p>② (감염력 유지 기간⁴⁾) 특정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물체의 표면상에서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p> <table border="1" data-bbox="215 967 920 1220"> <thead> <tr> <th>구분</th> <th>생존시간</th> <th>구분</th> <th>생존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구리</td> <td>최대 4시간</td> <td>유리</td> <td>2일</td> </tr> <tr> <td>골판지</td> <td>최대 24시간</td> <td>스테인리스, 플라스틱</td> <td>4일</td> </tr> <tr> <td>천과 나무</td> <td>1일</td> <td>의료용 마스크 겉면</td> <td>7일</td> </tr> </tbody> </table>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2일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4일	천과 나무	1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	7일	<p>▶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참조</p> <p>○ (소독(Disinfection²⁾) -----</p> <p>▶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참조</p> <p>○ (청소 및 소독의 효과) -----</p> <p>◆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물체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은 코로나19 및 기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임</p> <p>【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전파경로 및 생존기간³⁾</p> <p>① (전파경로)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묻은 물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음</p> <p>② (생존 기간⁴⁾) 특정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물체의 표면상에서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p> <table border="1" data-bbox="1001 1021 1673 1289"> <thead> <tr> <th>구분</th> <th>생존시간</th> <th>구분</th> <th>생존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구리</td> <td>최대 4시간</td> <td>유리</td> <td>2일</td> </tr> <tr> <td>골판지</td> <td>최대 24시간</td> <td>스테인리스, 플라스틱</td> <td>4일</td> </tr> <tr> <td>천과 나무</td> <td>1일</td> <td>의료용 마스크 겉면</td> <td>7일</td> </tr> </tbody> </table> <p>▶ (참고문헌) N Engl J Med. 2020 Apr 16;382(16):1564-7, The Lancet Microbe 2020 Apr 10.1016/S2666-5247(20)30003</p>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2일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4일	천과 나무	1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	7일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2일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4일																																
천과 나무	1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	7일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2일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4일																																
천과 나무	1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	7일																																
3	4. 환경 소독제의 종류	(삭제)	(지침관리팀)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이하 생략)		환경 소독제 본문에 지침 및 사이트 안내
4	<p>5. 대체 소독 방법의 국내외 현황</p> <p>(이하 생략)</p>	<p>(삭제)</p> <p>II. 소독 시 주의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소독과 관련된 주요 고려 사항]</p> <p>① 시설(건물)의 내부 환경표면 소독을 위해 소독제를 분사하거나 분무 및 훈증 등을 일상적 적용하는 것은 코로나19 소독에 권고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표면소독으로 비효과적이며 안전상의 위해요소 유발 (눈, 호흡기, 피부 자극) <p>② 실외 공간(거리, 시장 등)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기타 병원균 사멸을 위해 소독제를 분무, 분사하는 방법 또한 권장되지 않음(소독제는 유기물에 의해 불활성화되어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므로, 우선적으로 먼지, 오물 등 유기물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아닌 곳은 효과가 떨어짐)</p> <p>③ 소독 터널, 캐비닛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체의 비말전파 또는 접촉전파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흡입에 따른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p>④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의 표면소독 방법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성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음</p> <p>⑤ 연무, 훈증 및 광범위 분사의 경우 1차적 표면소독의 방법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고려해야 할 안전상의 위해요소를 가지고</p> </div>	<p>(지침관리팀)</p> <p>II. 소독 시 주의사항 이동</p> <p>대체 소독 방법의 국내외 현황 → 소독과 관련된 주요 고려 사항 수정</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있어 사용시 반드시 제조사의 매뉴얼을 확인하여 적용할 것</p>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 (15 November 2021)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 ▶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environmental surfa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II. 소독 시 주의사항			
5	<p>1. 일반 원칙</p> <p>○ (소독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구 착용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p>(신설)</p>	<p>1. 일반 원칙</p> <p>○ (직원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 및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구 착용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소독 시행 방법 등 교육 - 직원은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지침관리팀) 문구 수정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담당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p> <p>—*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p>	<p>▶ 코로나19 임상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증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p>(삭제)</p>	
5	<p>☞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환경부) 및</p> <p>[붙임 8]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p>	<p>▶ “[붙임 7]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참조</p> <p>▶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참조</p>	<p>(지침관리팀)</p> <p>소독 지침 형식 변경에 따라 일괄 적용하여 변경</p>
6	<p>2. 소독 전 준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도구 준비) 소독제, 물,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대걸레 등 *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개인보호구) ----- <p>—*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p>	<p>2. 소독 전 준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도구 준비) 소독제, 물,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대걸레 등 ▶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개인보호구) ----- 	<p>(지침관리팀)</p> <p>소독 지침 형식 변경에 따라 일괄 적용하여 변경 및 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제6판)에 따라 수정</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u>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u></p>	<p>▶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p>	
6	<p>○ 환경소독제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 ECDC 등에서 제 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 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 (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음 <p>〈 소독제 주요 성분별 유효농도·접촉시간·적용대상 〉 (이하생략)</p>	<p>○ 환경소독제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p>▶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참조</p> <p>▶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https://ecolife.me.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코로나19 살균” 검색</p> <p>(삭제)</p>	<p>(지침관리팀)</p> <p>소독 지침 형식 변경에 따라 일괄 적용하여 변경 및 문구 수정</p>
7	<p>【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 	<p>【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참조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붙임 7) 	<p>(지침관리팀)</p> <p>환경소독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조 명시하여 수정</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붙임 8)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5페이지 참조</p> <p>*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p> <p>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p> <p>*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p> <p>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붙임 7, 8)</p> <p>(신설)</p> <p>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p> <p>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p> <p>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p>	<p>-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조</p> <p>-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p> <p>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p> <p>(삭제)</p> <p>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p> <p>-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조</p> <p>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p> <p>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p> <p>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p>	
7	<p>3. 소독 시 주의사항</p> <p>○ -----</p> <p>☞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p>	<p>3. 소독 시 주의사항</p> <p>○ -----</p> <p>▶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참조</p>	<p>지침관리팀) 소독 지침 형식 변경에 따라 일괄 적용하여 변경 및 문구 수정</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 -----</p> <p>*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p> <p>○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p> <p>*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 → 비누 손 세정 → 마스크 제거 → 비누 손 세정 → 새 마스크 착용 → 새 장갑 착용</p>	<p>○ -----</p> <p>▶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p> <p>○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p> <p>▶ (교체 순서 참고) 장갑 제거 → 손소독 → 마스크 제거 → 손소독 → 새 마스크 착용 → 새 장갑 착용</p>	
8	<p>4. 소독 후 주의사항</p> <p>○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p> <p>* <u>코로나19 임상증상</u></p> <p>-<u>(주요증상) 발열(37.5 °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u></p> <p>-<u>(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p> <p>①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p> <p>* 보행로와 도로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p> </div>	<p>4. 소독 후 주의사항</p> <p>(삭제)</p>	<p>(지침관리팀)</p> <p>소독 지침 형식 변경에 따라 일괄 적용하여 변경 및 문구 수정</p> <p>소독지침 중복 내용 간소화하기 위해 소독 시 주의사항 일반원칙에 반영</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음</p> <p>② 과도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p> <p>③ 본 안내서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p>		
Ⅲ. 환자 이용공간(구역) 청소·소독 → 환경 청소 및 소독			
10	<p>1. 청소·소독 방법</p> <p>(신설)</p> <p>○ 청소·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p> <p>*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최대 24시간 환기</p> <p>○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등급)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p> <p>*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p> <p>(신설)</p>	<p>1. 청소·소독 방법</p> <p>○ (사전 준비)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등급)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p> <p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p> <p>○ 청소·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p> <p>(삭제)</p> <p>-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청소·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포장하여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할 것</p>	<p>(지침관리팀)</p> <p>소독 지침 형식 변경에 따라 일괄 적용하여 변경 및 문구 수정</p> <p>소독지침 중복 내용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 내용 삭제</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소독제 희석액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필요시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 <p>*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1,000ppm 이상 농도의 희석액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p> <p>(신설)</p>	<p>○ 소독제의 선택과 준비</p>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소독제는 공인된 기관(환경부 등)의 승인·허가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여 소독제 농도, 적용시간, 유효기간 등을 준수 - 희석한 소독제의 경우 보관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희석 소독제의 오염을 예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1,000ppm 이상 농도의 희석액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 ▶ 환경소독제 관련 상세내용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환경부, '22. 2. 21.) 참조 ▶ 소독제 정보: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https://ecolife.me.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코로나19 살균” 검색 </div>	
11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소독 순서(예시)】 (이하생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p> </div>	<p>(삭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유의사항】</p> </div>	<p>(지침관리팀)</p> <p>일부 중복 내용 삭제 및 폐기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고</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p> <p>①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에 이물질(유기물) 등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 감소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u>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u> <p>(신설)</p> <p>② 소독제를 적신 천(헝겂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p>○ (표면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헝겂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겂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p>**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p>	<p>①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p>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p>(삭제)</p> <p>▶ 폐기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고</p> <p>② 소독제를 적신 천(헝겂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p> <p>(삭제)</p> <p>○ (표면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 또는 일회용 타올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 또는 일회용 타올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p> <p>▶ 소독제 종류에 따라 권고되는 소독액 접촉시간에 따름</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소독 부위 예시】</p> <p>①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조명 조절 장치,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p> <p>② 업무 공간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p> <p>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등</p> </div>	
12	<p>○ (바닥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p> <p>-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p> <p>-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쓸어내릴 것</p> <p>○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p> <p>*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후에는 변기외부</p>	<p>○ (바닥 청소소독) 병원균의 분무 발생을 막기 위해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보다는 청소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p> <p>- 소독제에 적신 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닦음</p> <p>-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p> <p>(삭제)</p> <p>○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p>▶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후에는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p> </div>	(지침관리팀) 중복 내용 일부 간소화 및 삭제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p> <p>○ (청소·소독 도구) 한 공간에 사용된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하고, 소독 업무 종료 시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p> <p>(신설)</p> <p>- 양동이는 소독제 희석액(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p> <p>- 바닥 소독에 사용한 대걸레 헤드나 표면 소독에 사용한 천 등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p> <p>-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아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p> <p>▶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 참조('20.3.2.)</p> <p>○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p>	<p>○ (청소·소독 도구) 한 공간에 사용된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하고, 소독 업무 종료 시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p> <p>- 청소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p> <p>- 청소 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p> <p>- 대걸레는 매일 아침 또는 기관 규정에 따라 교체하며, 오염물이 많은 표면을 소독한 후에는 바로 교체</p> <p>- 바닥 소독 또는 표면 소독에 사용한 일회용 걸레 등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p> <p>- 양동이는 소독제 희석액(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소독</p> <p>(삭제)</p> <p>-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p> <p>▶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2.2.9.)</p> <p>(삭제)</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환자의 거주 공간 소독 방법】</p> <p>①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p> <p>② 세부적인 소독 절차는 [붙임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 참조</p> <p>(신설)</p>	<p>○ 청소·소독 후 순서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제거하고 손을 씻는다. 필요시 샤워한다.</p>	
13-14	<p>2. 세탁 방법</p> <p>○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매번 사용 후 폐기하며 사용 가능한 장갑을 다른 가정용으로는 재사용해서는 안됨</p> <p>* 일회용은 반드시 사용 후 폐기</p> <p>○ 환자의 세탁물을 흔들지 말 것</p> <p>(신설)</p> <p>○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수 세탁 경우 일반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하며, 세탁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p>2. 세탁물 관리</p> <p>○ (보호구)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매번 사용 후 폐기하며 사용 가능한 장갑을 다른 가정용으로는 재사용해서는 안됨</p> <p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일회용은 반드시 사용 후 폐기</p> <p>○ (세탁물 이동)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을 옮길 때에는 흔들거나 터는 등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하지 말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물 운반에 사용하는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 또는 기타 카트 등은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재사용 할 경우 소독 후 사용 <p>○ (세탁 방법)</p> <p>①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수 세탁 경우 일반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하며, 세탁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지침관리팀) 중복 내용 일부 간소화 및 삭제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 환경부에서 세탁용 소독제로 승인한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60℃ 이하에서 세탁</p> <p>**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p> <p>○ (세탁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손세탁</p> <p>○ 세탁하고 완전히 말릴 것</p> <p>* 건조기가 있는 경우, 80℃에서 2시간 동안 건조 권장</p> <p>○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자가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p> <p>○ 세탁물 운반 시 일회용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 또는 기타 컵트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독하고 재사용</p> <p>○ 사용한 옷걸이는 표면 소독에 따라 소독</p> <p>○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적절하게 세척 할 수 없는 직물의 경우 폐기</p> <p>○ 세탁 후에도 일회용장갑 등을 벗고 반드시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류 등 린넨물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준수</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환경부에서 세탁용 소독제로 승인한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60℃ 이하에서 세탁</p> <p>▶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s://ecolife.me.go.kr</p> </div> <p>② (세탁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손세탁</p> <p>○ (건조) 세탁 후 완전히 말릴 것</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건조기가 있는 경우, 80℃에서 2시간 동안 건조 권장</p> </div> <p>○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자가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p> <p>(삭제)</p> <p>○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적절하게 세척 할 수 없는 직물의 경우 폐기</p> <p>(삭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류 등 린넨물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준수</p> </div>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3. 유의사항</p> <p>○ (직원 사후 관리) 청소소독실시한 직원에게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p> <p>*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align="center">【올바른 소독방법 콘텐츠 활용 안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콘텐츠</th> <th style="width: 40%;">다운로드링크</th> </tr> </thead> <tbody> <tr> <td>①[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1 (소독 전 준비사항)</td> <td align="center">https://vo.la/EfPP</td> </tr> <tr> <td>②[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2 (소독제 만들기)</td> <td align="center">https://vo.la/xqzo</td> </tr> <tr> <td>③[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 (소독 방법)</td> <td align="center">https://vo.la/Jybw</td> </tr> <tr> <td>④[영상]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 영상</td> <td align="center">https://vo.la/GvFO</td> </tr> </tbody> </table> <p>* 다운로드 안내</p> <p>-[카드뉴스]기관홈페이지(www.kcdc.go.kr)→알림·자료→홍보자료→카드뉴스 "소독" 검색</p> <p>-[영상]기관홈페이지(www.kcdc.go.kr)→알림·자료→홍보자료→영상자료 "소독" 검색</p> </div>	콘텐츠	다운로드링크	①[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1 (소독 전 준비사항)	https://vo.la/EfPP	②[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2 (소독제 만들기)	https://vo.la/xqzo	③[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 (소독 방법)	https://vo.la/Jybw	④[영상]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 영상	https://vo.la/GvFO	<p>(삭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align="center">【올바른 소독방법 콘텐츠 활용 안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0%;">콘텐츠</th> </tr> </thead> <tbody> <tr> <td>①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1 (소독 전 준비사항)</td> </tr> <tr> <td>②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2 (소독제 만들기)</td> </tr> <tr> <td>③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 (소독 방법)</td> </tr> <tr> <td>④ [영상]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 영상</td> </tr> </tbody> </table> <p align="center">▶ 다운로드 안내</p> <p>①(카드뉴스)기관홈페이지(www.kcdc.go.kr)→알림·자료→홍보자료→카드뉴스 "소독" 검색</p> <p>②(영상)기관홈페이지(www.kcdc.go.kr)→알림·자료→홍보자료→영상자료 "소독" 검색</p> </div>	콘텐츠	①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1 (소독 전 준비사항)	②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2 (소독제 만들기)	③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 (소독 방법)	④ [영상]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 영상	
콘텐츠	다운로드링크																	
①[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1 (소독 전 준비사항)	https://vo.la/EfPP																	
②[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2 (소독제 만들기)	https://vo.la/xqzo																	
③[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 (소독 방법)	https://vo.la/Jybw																	
④[영상]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 영상	https://vo.la/GvFO																	
콘텐츠																		
①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1 (소독 전 준비사항)																		
②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2 (소독제 만들기)																		
③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 (소독 방법)																		
④ [영상]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 영상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IV.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p15~16 삭제			
15-16	IV.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삭제)	(지침관리팀)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은 붙임 5. 일상 소독 방법(예시) 참조로 일괄 적용
붙임			
17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붙임 1 소독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 사항 </div> <p>○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항)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u>감염병예방법</u>」시행규칙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별표 5 및 별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므로 법령에서 제시하지 않은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 소독관련 세부사항은 본 지침을 준수</u>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제1항제13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붙임 1 소독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 사항 </div> <p>○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항)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u>감염병예방법</u> 시행규칙」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및 별표 5·별표 6 : <u>코로나19는 ‘제2급감염병’이므로 법령에서 제시하지 않은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 소독관련 세부사항은 본 지침을 준수</u></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제1항제13호 감염병병원체에 <u>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u> 	(지침관리팀)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문구 수정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소독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은 오염된 시설을 관리·운영자에게 소독시행 명령 통지</p> <p>* 시설명, 소독범위, 소독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p>	<p>○ (소독명령)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은 오염된 시설을 관리·운영자에게 소독시행 명령 통지</p> <p>▶ 시설명, 소독범위, 소독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p>																									
20	<p>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p> <p>○ 차아염소산나트륨 화석액(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소독하고 하루정도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p> <table border="1" data-bbox="219 667 949 1417"> <thead> <tr> <th>구분</th> <th>소독시기</th> <th>사용 재개 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집단 시설·다중 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td> <td>·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 시</td> <td>·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td> <td>·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 화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td> </tr> <tr> <td>의료기관(병원)</td> <td>·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환자가 재살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2회 이상 시행하며</td> <td>·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 권고</td> <t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용) 안(’20.3.16.)</td> </tr> </tbody> </table>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 시설·다중 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 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 화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	의료기관(병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환자가 재살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2회 이상 시행하며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용) 안(’20.3.16.)	<p>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p> <p>○ 차아염소산나트륨 화석액(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삭제)</p> <table border="1" data-bbox="972 667 1697 1417"> <thead> <tr> <th>구분</th> <th>소독시기</th> <th>사용 재개 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집단 시설·다중 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td> <td>○ 환자의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td> <td>○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td> <td>○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고농도 화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td> </tr> <tr> <td>의료기관(병원)</td> <td>○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td> <td>○ 소독 후 시간당 6회 환기</td> <td>「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td> </tr> </tbody> </table>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 시설·다중 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	○ 환자의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고농도 화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	의료기관(병원)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 소독 후 시간당 6회 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	<p>(지침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제2판에 따라 수정</p>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 시설·다중 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 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 화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																								
의료기관(병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환자가 재살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2회 이상 시행하며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용) 안(’20.3.16.)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 시설·다중 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	○ 환자의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고농도 화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																								
의료기관(병원)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 소독 후 시간당 6회 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3회 이상 시행 ·환자 퇴실 후 시행</p>			<p>원)</p>	<p>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2회 이상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3회 이상 시행 ○ 환자 퇴실 후 시행</p>	<p>조건에서 최소 1 시간 환 기</p>	<p>침 참조</p>		
<p>의료기관 (의원급)</p>	<p>·코로나19 의사환자가 다녀간 후 환경관리</p>		<p>·신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의원급 의료기관용) - 안 (‘20.2.11.)</p>		<p>○ 코로나19 환자(의심되는 경우 포함)가 다녀간 후 환경관리</p>				
<p>의료기관 (응급실)</p>	<p>·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p>	<p>·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조건에서 4시간 이상 환기 이후 진료재개 권고</p>	<p>·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의료기관 무안내(‘20.2.20.)</p>		<p>○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21	<p>붙임 3 개인보호구 착용의 및 손위생 방법(WHO, 2020)</p> <p><input type="checkbox"/>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이하생략)</p> <p><input type="checkbox"/>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 (이하생략)</p>	<p>붙임 3 개인보호구 착용의 및 손위생 방법(삭제)</p> <p><input type="checkbox"/> 개인보호구 4종 착용 예시 순서 (이하생략)</p> <p><input type="checkbox"/>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 (이하생략)</p>	<p>(지침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반영하여 수정</p>
24	<p>붙임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p> <p>1. 청소·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p> <p>2.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1,000ppm 희석액</p> <p>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p> <p>4.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p> <p>5.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p> <p>6.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p>	<p>붙임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p> <p>1. 청소·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p> <p>▶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p> <p>2.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p> <p>▶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1,000ppm 희석액</p> <p>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p> <p>4.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p> <p>5.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p> <p>6.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p>	<p>(지침관리팀) 일부 중복 내용 삭제 및 문구 수정</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p> <p>7.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p> <p>* 고온에서 섬유세탁용 살균제 사용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에서 사용</p> <p>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p> <p>*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p> <p>9.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p> <p>10.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p> <p>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p> <p>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p> <p>☞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p>	<p>▶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p> <p>7.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p> <p>▶ 고온에서 섬유세탁용 살균제 사용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에서 사용</p> <p>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적절하게 소독액으로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또는 어려울 경우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삭제)</p> <p>9.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p> <p>10.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p> <p>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p> <p>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15. 소독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p>	<p>▶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2.2.9.)</p> <p>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삭제)</p>	
25	<p>붙임 5 일상 소독 방법예시</p> <p>1.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페트병을 이용하여 소독제 희석액을 만든다. (이해생략) 4. 청소·소독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씻기를 한다.</p>	<p>붙임 5 일상 소독 방법예시</p> <p>1.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소독제 희석액을 만든다. (이해생략) 4. 청소·소독 후에는 보호구를 제거하고 물과 비누로 손씻기를 한다.</p>	(지침관리팀) 일부 문구 수정
26	<p>붙임 6 확진환자 운송 차량의 청소소독</p> <p>※ 코로나19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가 의료기관 진료시 이동수단으로 이용한 차량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p>	<p>붙임 6 코로나19 관련 차량의 청소소독 (삭제)</p>	(지침관리팀) 일부 문구 수정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p>1. <u>최소한 코대 시차의 밑에서 한지</u> 차량에서 흔히 접하는 표면을 깨끗이 소독한다.</p> <p>2. 적절한 환기 제공을 포함하여 세척 및 소독 절차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준수한다.</p> <p>3. 차량 <u>청소시 문과 창문이 열어야 한다.</u></p> <p>4. <u>소독안내</u> 지침에 따라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필요한 다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가능한 경우 일회용 가운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p> <p>5. 차량 내부의 단단한 비 다공성 표면(예 : 단단한 시트, 팔걸이, <u>도어 핸들</u>, 시트 벨트 버클, 조명 및 공기 조절 장치, <u>도어 및 창 손잡이</u>)은 특히 더러워져 있으면 표면에 비누와 물로 청소 후 소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은 환경부의 승인·신고 소독제를 사용하며 적용 및 적절한 환기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설명서를 따르며 제품의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 만약 해당 소독제가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u>알콜(에탄올 70%이상)</u>을 사용하며 이때 다른 세척제와 혼합하지 않는다. <p>6. 직물 시트와 같은 부드럽고 다공성인 표면의 경우 눈에 보이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해당 표면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적절한 클리너로 청소한 후 다공성 표면에 적합하고 환경부의 승인·신고 소독제를 사용한다.</p> <p>7. 차량에 사용되는 태블릿 또는 터치스크린과 같이 자주 접촉하는 전자기기 표면의 경우 눈에 띄는 먼지를 제거한 다음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청소·소독하며 설명서가 없는 경우 알코올을 함유한 물티슈 또는 <u>알콜(에탄올 70%이상)</u>을 사용하여 소독한다.</p> <p>8. 차량 청소 및 소독에 사용되는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청소 후 제거 및 <u>폐기해야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용 장갑 또는 개인보호구를 탈의한 후 비누와 물로 즉시 손을 씻거나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u>손 소독제</u>를 사용한다. - 일회용 방수용 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청소 및 소독 시 <u>착용한 작업복/의복은 소독안내 III. 환기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u>, 2 세탁의 내용을 참고하여 <u>세탁해야하며</u> 세탁물 취급 후 비누와 물로 즉시 손을 씻는다. 	<p>1. 차량에서 흔히 접하는 표면을 깨끗이 소독한다.</p> <p>2. 적절한 환기 제공을 포함하여 세척 및 소독 절차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준수한다.</p> <p>3. 차량 <u>청소시 문과 창문이 열어야 한다.</u></p> <p>4. <u>소독안내</u> 지침에 따라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필요한 다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가능한 경우 일회용 가운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p> <p>5. 차량 내부의 단단한 비 다공성 표면(예 : 단단한 시트, 팔걸이, <u>도어 핸들</u>, 시트 벨트 버클, 조명 및 공기 조절 장치, <u>도어 및 창 손잡이</u>)은 특히 더러워져 있으면 표면에 비누와 물로 청소 후 소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은 환경부의 승인·신고 소독제를 사용하며 적용 및 적절한 환기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설명서를 따르며 제품의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 만약 해당 소독제가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u>알콜(에탄올 70%이상)</u>을 사용하며 이때 다른 세척제와 혼합하지 않는다. <p>6. 직물 시트와 같은 부드럽고 다공성인 표면의 경우 눈에 보이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해당 표면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적절한 클리너로 청소한 후 다공성 표면에 적합하고 환경부의 승인·신고 소독제를 사용한다.</p> <p>7. 차량에 사용되는 태블릿 또는 터치스크린과 같이 자주 접촉하는 전자기기 표면의 경우 눈에 띄는 먼지를 제거한 다음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청소·소독하며 설명서가 없는 경우 알코올을 함유한 물티슈 또는 <u>알콜(에탄올 70%이상)</u>을 사용하여 소독한다.</p> <p>8. 차량 청소 및 소독에 사용되는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청소 후 제거 및 <u>폐기해야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용 장갑 또는 개인보호구를 탈의한 후 비누와 물로 즉시 손을 씻거나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u>손 소독제</u>를 사용한다. - 일회용 방수용 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청소 및 소독 시 <u>착용한 작업복/의복은 소독안내 III. 환경 청소 및 소독</u>, 2. 세탁의 내용을 참고하여 <u>세탁해야하며</u> 세탁물 취급 후 비누와 물로 즉시 손을 씻는다. 	
27-35	<p>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2020)</p>	(삭제)	(지침관리팀) 본문에 살균·소독제품 관련 내용에 환경부 소관지침 인용 안내하므로 삭제
38-42	<p>붙임 6 일상소독 카드 뉴스</p>	(삭제)	(지침관리팀) 일상소독 카드 뉴스 삭제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자주 묻는 질문			
43-52	Q1, Q14, Q32	(삭제)	(지침관리팀) 소독지침 본문 일부 수정에 따라 Q&A 내용 삭제 및 문구 수정
46	<p>Q10. 일상 청소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청소나 소독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입니다.」 ○ 일상 소독은 시설별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인 소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IV. 일상 청소 소독 방법 및 [붙임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Q9. 일상 청소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청소나 소독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입니다.」 ○ 일상 소독은 시설별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인 소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48	<p>Q16. 오염된 표면에 소독제를 얼마나 오래 접촉시켜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 시간은 소독제가 바이러스와 접촉하여 상당수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므로 소독제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I. 소독시 주의사항 중 소독제 주요 성분별 유효농도 접촉시간 적용대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리질에서 착안연수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5분 이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47 -</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70% 에탄올)은 착안연수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 (예: 금속 표면)을 닦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표면 접촉시간은 5분 이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Q14. 오염된 표면에 소독제를 얼마나 오래 접촉시켜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 시간은 소독제가 바이러스와 접촉하여 상당수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므로 소독제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p>▶ 「코로나19 실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코로나19 실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참조」</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48	<p>Q17. 피부에 가정용 락스와 같은 소독제가 닿으면 피부 자극을 유발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제의 노출 영향은 사용하는 소독제의 원료물질, 농도, 노출 기간 및 사용된 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접촉 부위에 부종, 염증 및 발작 등 피부 및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독성도 있습니다.」 ○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갑, 앞치마 등 필요한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제품별 사용량, 사용 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 설명서의 사용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붙임 7], [붙임 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Q15. 피부에 가정용 락스와 같은 소독제가 닿으면 피부 자극을 유발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제의 노출 영향은 사용하는 소독제의 원료물질, 농도, 노출 기간 및 사용된 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접촉 부위에 부종, 염증 및 발작 등 피부 및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독성도 있습니다.」 ○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갑, 앞치마 등 필요한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제품별 사용량, 사용 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 설명서의 사용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8	<p>Q19. 커튼, 카펫, 베개와 같은 실내 직물 물품(다공성)을 소독해야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세탁 가능한 직물인 침대 시트, 베개, 커버, 담요 및 기타 직물은 세탁기에 넣고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탁하십시오(본문 III-환경 청소 및 소독 중 2. 세탁 방법 참조).」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p>Q17. 커튼, 카펫, 베개와 같은 실내 직물 물품(다공성)을 소독해야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세탁 가능한 직물인 침대 시트, 베개, 커버, 담요 및 기타 직물은 세탁기에 넣고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탁하십시오(본문 III. 환경 청소 및 소독 중 2. 세탁물 관리 참조).」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50	<p>Q2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출입구에 살균 터널을 사용할 수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CDC에 따르면 살균 터널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 또한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다만 환경부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표면 소독용(환경 소독)으로 승인받은 것이고 인체에 직접 분무/분사하는 소독제 승인제품은 없으며, 인체 사용가능한 소독제는 아직껏 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p>Q2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출입구에 살균 터널을 사용할 수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CDC에 따르면 살균 터널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 또한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록			
57	<p>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 발취</p>	<p>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6판) 발취</p>	<p>(지침관리팀) 부록 환경부 지침 사이트 안내 및 요약</p>

쪽	현행(3-4판)	3-5판 개정(안)	개정사유
	(이하생략)	(이하생략)	